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76
----------	------

2019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권순선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순선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유해물질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교육감은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6일 권순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76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이 친환경 소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난 2016년 학교 내 운동장 및 트랙 등의 체육시설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체 134개교에서 유해성 물질 기준 초과량이 검출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시설의 사용 중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 또한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관련 예산의 지원을 중단하고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고(체육건강청소년과-14199,2013.7.16.), 기존 일반 마사토 보다 성능이 개선된 친환경 마사토를 개발하여 보급 및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sup>1)</sup>.

[표-1] 친환경 운동장 설치 현황

(단위 : 교, 천원)

설치년도	2016	2017	2018	2019	계
설치교	12	10	10	13	45
예산액	2,200,000	2,119,250	2,237,155	2,681,455	9,237,860

1) 학교 운동장 설계지침 및 시설기준, 서울시교육청, 2015.5.

-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sup>2)</sup>,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도료나 마감재, 모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3조<sup>3)</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sup>4)</sup>.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 및 법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검사를 최초 설치 시에 시행할 뿐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해성 조사나 관리 및 유해성 물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바,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2018.12.), p. 24

3)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⑨<생략>

4) 어린이 놀이시설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체시설 중 일부(10%)만 표본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 물질의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구체적 조성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친환경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해성 등의 실태조사와 조성계획시의 의견수렴 및 친환경 모델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sup>5)</sup>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조성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안 제4조는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조성계획에는 안 제4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5)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다. 이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운동장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4조의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 제5조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성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모두 시행시기가 조례안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동 규정이 선언적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는바, 특히 조성계획의 수립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안 제6조의 의견수렴 및 안 제7조 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은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이란 운동장의 소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생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게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3. 친환경 기술 및 적용 모델 개발
4.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시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